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00호 2019. 10. 1. (화)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26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2
- 정선군 규칙 제1327호 정선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1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규 칙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26호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경작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이하 “농작물 피해”라 한다) 발생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물 피해조사를 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시장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동일 농업인 세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 기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경량 장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자의 차량유류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②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라니 1마리당 4만원

2. 멧돼지 1마리당 5만원

③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획물의 사진 및 포획물 사체 일부 등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포획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작물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 비율

파종 또는 정식 후 생육일수	피해 작목	적용 비율	비 고
30일 이내	식용작물	50%	
	원예작물	60%	
	기타	50%	
31 ~ 60일 이내	식용작물	70%	
	원예작물	100%	
	기타	70%	
61 ~ 90일 이내	식용작물	85%	
	원예작물	100%	
	기타	85%	
90일 초과	식용작물	100%	
	원예작물	100%	
	기타	100%	

“기타” 라 함은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 채소 이외의 원예작물인 과수, 화훼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서

신고인 (경작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발생 상 황	피해농경지		피 해 작물명	파종 시기	가 해 야생동물	피해발생 기 간	총 피해 면적 (m ²)	생육일수 (일)
	소재지	지번						
	계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발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해확인 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읍 . 면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서

피 해 경 작 자	주소					조사 사 확 인	조사일시		
		공무원	성명 (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경작자	성명 (인)					
			마을이장	성명 (인)					
피 해 조 사 결 과	지번	피해 농작물	가해야생 동 물 명	필지면적 (m ²)	총 피해면적 (m ²)	소득자료 (원/m ²)	피해액 (원)	지원비율 (%)	피해지 원액 (원)
	계								
참고 사항	※ 해당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현지조사시 피해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시설명, 파종 또는 정식후 생육일수, 기타 특이사항 기재								
첨부 서류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피해농작물 전경사진 3. 신고자 통장사본 1부								
비고	1. 피해 액 = 총 피해면적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2. 지원비율 =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비율(%) × 생육단계별 비율(%) 가. 피해예방의지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 (1)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2)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50% 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른 피해지원금 적용비율[별표 1]적용 3. 피해지원액 = 피해액 × 지원비율								

[별지 제3호 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청구)서

신청인	성 명		포획허가번호	
포획활동일	20 . . . ~ 20 . . .			
포획활동장소	정선군 (면·동) 리 번지 일원			
야생동물 포획현황	유해야생동물	계		
	포 획 량			
	포 상 금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처리 하였기에 포상금을 신청(청구) 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날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통장사본 1부
2. 포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1부.

관계법령 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 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

리 · 방조망(防鳥網) · 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 ·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 다. 피해 명세서
-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등 허가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 · 방사 · 이식 · 가공 · 유통 · 보관 · 수출 · 수입 · 반출 · 반입(가공 · 유통 · 보관 · 수출 · 수입 · 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 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 · 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 채취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한다)
 2.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3. 관람·전시에 관한 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4.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만 해당한다)
 5.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법 제14조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4조제1항제6호만 해당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비 용 추 계 서

I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신청 : 조례안 제7조
- 나. 피해보상액 산정 : 조례안 제12조
- 다. 포획방지단 운영 : 조례안 제1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0년~2024년 (5년)
- 추계방법 : 최근 3년간 (2017~2019년) 사업비 평균치로 비용추계를 산정 하였음.

나. 추계의 결과

- 2020년~2024년까지 약4,255백만원 지출예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총 비용	851	851	851	851	851	4,255
세출	국비	170	170	170	170	850
	도비	170	170	170	170	850
	군비	511	511	511	511	2,555

3. 관련 의견

- 연도별 사업지원 규모에 따라 비용추계가 변경 될수 있음.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5년간 비용추계 사업비 : 4,255백만원

2. 사업비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평 균
총사업비					851
피해예방	255	400	623	1,278	426
피해보상	400	142	104	646	215
포획방지단운영	150	268	213	631	210

환경과장 전 광 덕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재원 조달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의존 재원	소 계(백만원, 40%)	340	340	340	340	340	1,700
	국비	170	170	170	170	170	850
	도비	170	170	170	170	170	850
자체 수입	소 계(백만원, 60%)	511	511	511	511	511	2,555
	지방세	511	511	511	511	511	2,555

2. 관련 의견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은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나,
포획 방지단운영은 자체 수입(군비)으로만 충당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환경과장 전 광 덕

제안이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2019.3.21. 발령되어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야생 동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시행규칙 변경

- 피해신고 및 조사(안 제2조)
- 피해보상액 등 산정(안 제3조)
- 피해방지단 운영 지원(안 제4조)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27호

정선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선군 공무원 6급 이상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선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④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임,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정선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과 함께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

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18.10.25. 시행)에 이후 지자체에서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등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라 행정착오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향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해석 의견 :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나. 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0.5.30. 선고 99추85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체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함
-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지자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 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 인천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광주광역시장(재난방재과), 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재난관리과장), 경기도지사(자연재난과장), 강원도지사(경재과장), 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충청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전라남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 경상남도지사(재난대응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재난대응과장)

주무관 변환동	기술서기관 이상혁	재난영향분석 전결 2019. 5. 30. 과장 임재웅
------------	--------------	----------------------------------

협조자

시행 재난영향분석과-2873 (2019. 5. 30.) 접수 방재과-6276 (2019. 5. 30.)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17-2동 533호전화번호 044-205-5169 팩스번호 044-205-8935 / byunhd78@mail.go.kr / 부분공개(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강원정선039			
정책명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정선군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명	윤광수	전화번호	033-560-249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7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설과)	<p>‘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함</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성별 특성)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제출함. - 본 규칙은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2조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임.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는 위 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의 전 분야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당위적 요구이며 성별 균형 참여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 규칙 제2조제6항에서도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피해 발생 정도가 다를 수 있음. 최근 일어난 주요 재난(세월호 사고, 제천 스파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에서 여성 사망률이 높은 사례는 흔히 발견됨. -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5년 조사한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대비·대응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항목에 남성의 44.3%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여성은 32.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음.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다’는 문항에 			

도 남성의 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14.2%로 성별 간 차이가 컸음.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교육 경험과 관련, 평생 한 번이라도 재난이나 안전사고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성은 81.4%, 여성은 53.5%가 '있었다'고 답해 성별 간 차이를 보였음.

- 남성의 경우 군대, 민방위교육 등의 훈련 과정, 직장에서의 재난대응 훈련 등 공적 영역에서 교육 기회가 있었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재난대응훈련 기회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실제 생활영역에서 여성은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재난 발생 시 노약자 및 영유아를 동반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 즉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성별 간 일상 생활의 차이, 재난 대응 훈련 경험 유무 등에 따라 대응이나 피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재해 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재난취약자와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적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5조제2항을 신설할 것을 권유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p><u>제5조(기능)</u></p> <p><u>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4. (생략) <신설></p>	<p><u>제2조(기능)</u></p> <p><u>① 생략.</u> 1. ~ 4. (현행과 같음)</p> <p><u>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u></p>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19년 8월 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08월 01일

정선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전희라/033-560-2316)

건설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9A강원정선039		
정책명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정선군	
	부서명	건설과	
	담당자명	윤광수	전화번호 033-560-2497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상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하여 운영 규칙에 반영하겠음

2019년 08월 05일

여성청소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11조(수당 및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정선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지급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예산액	4,900	4,900	4,900	4,900	

4. 작성자

건설과장 최종수

제안이유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근거 상실로 조례를 폐지하고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5조)
- 다. 위원회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마.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심의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사.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아. 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